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2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공제율 상향 등	3

I. 개요

1.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5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10.
- (3) 회 부 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

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공제율 상향 등(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이연희의원안, 윤영석의원안)

현 행	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이연희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5)	☐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사후관리 예외 대상 신설, 공제대상 확대 등	☐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삭제	☐ 과세특례 대상에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	☐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외국자회사 지분 요건 완화, 사후관리 예외 대상 신설, 공제대상 확대 등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 <u>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u> 」 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및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현 행	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이연희의원안	윤영석의원안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u>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u>)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내국인이 100% 직접 출	<u>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u>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추가 ③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투자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u>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및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한정</u>)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u>완화: 둘 이상의 내국인이</u>

현 행	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이연희의원안	윤영석의원안
<u>자</u> <u><신 설></u> ○ <u>공제율: 3%</u> ○ 사 후 관 리 :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투자일 또 는 출자일 부터 5년 이 지나기 전에 투자 자산 또는 출 자 지 분 을 이전하 거나 회수 하는 경우	○ 공제율: 대 5%, 중견 7%, 중소 10% ○ 사 후 관 리 :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투자일 또 는 출자일 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에 투자자 산 또는 출 자 지 분 을 이전하거나 회 수 하 는 경우. <u>다만,</u>	○ 공제율: 대 5%, 중견 7%, 중소 10% ○ 사 후 관 리 :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 제·제련을 위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 설 (“정 제 련 시 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 한 투자 ○ 공제율: (현 행과 같음) ○ 사 후 관 리 :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현행과 같음)	<u>공동으로 출자 한 경우 포함</u> ○ 공제율: 대 5%, 중견 8%, 중소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 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3% 추가 적용 ○ 사 후 관 리 : 세액공제액 등 납부 - 투자일 또 는 출자일 부터 5년 이 지나기 전에 투자 자산 또는 출 자 지 분 을 이전하 거나 회수 하는 경우.

현 행	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이연희의원안	윤영석의원안
	<u>「해외자원 개발 사업법 시 행 령」 제11조의3 제2항제1호 의 사유* 로 광업권 또는 조광 권이 종료 되는 경우 는 제외</u> <u>* 상업적 생산 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 되는 경우</u>			<u>다만, 대통 령 령 으 로 정하는 사 유로 사업 이 종료된 경우는 제 외</u>
- 투자일 또 는 출자일 부터 3년이 되는 날까 지 광업권 또는 조광 권을 취득 하지 못하 는 경우 <u><신 설></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 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 득 하 지 못하는 경우	
○ 적 용 기 한 : <u>2026. 12.</u> <u>31.</u>	○ 적 용 기 한 : <u>2033. 12.</u> <u>31.</u> ○ 시행일: 공 포한 날	<u><삭 제></u> ○ 시행일: 공 포한 날	○ 적 용 기 한 : (현행과 같 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 적 용 기 한 : <u>2033. 12.</u> <u>31.</u> ○ 시 행 일 : 2026. 1. 1.

현 행	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이연희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 후 투자나 출자를 하 는 경우부 터 적용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 후 투자하 는 분부터 적용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부 터 적용

* 이인선의원안 2024. 10. 14. 발의(의안번호 4681), 이종배의원안 2024. 12. 18. 발의(의안번호 6680), 이연희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8), 윤영석의원안 2025. 10. 10. 발의(의안번호 13526)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개요

□ 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¹⁾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²⁾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하여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①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①과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임.³⁾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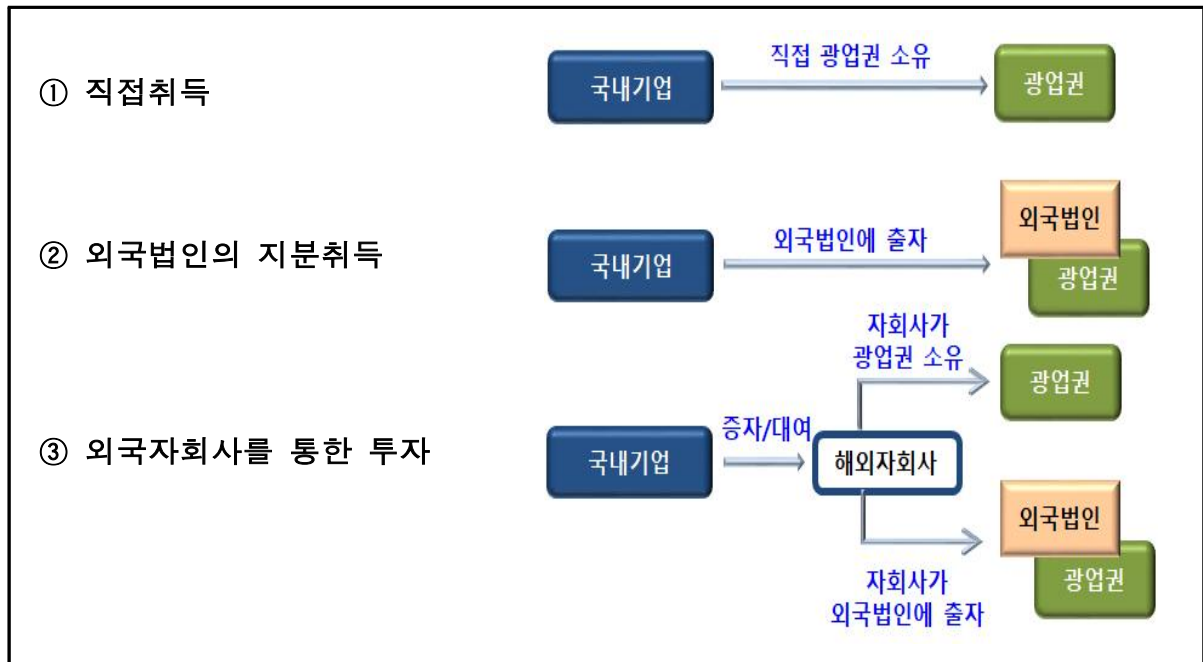
2)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의미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유형]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그리고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또는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음.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다가 2013년에 일몰이 도래하였는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정부는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런데 무리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공기업 부실 등으로 이어져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축소, 광물공사 자원개발 중단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가 감소하였음.⁵⁾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 예산 감액 등 정부 지원 축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유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5) 유전개발출자(억원): ('12)6,903 → ('16)300 → ('20)135 → ('22)376 → ('23)301 → ('24)481
광물자원공사출자(억원): ('13)1,800 → ('17)300 → '19년 이후 자원개발출자 0

이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2021년 기준 전체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63억 2,300만 달러에서 23억 9,200만 달러로 △62.1% 감소한 가운데, 석유·가스는 △56.1%, 일반광물은 △75.9% 감소하였음.⁶⁾

또한, 석유가스·광물 분야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은 2013년 536개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3년 387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신규투자도 2008년 107건에서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93	182	166	141	131	122	119	118	110	105	100
일반광물	343	345	334	335	322	316	308	301	291	289	287
합계	536	527	500	476	453	438	427	419	401	394	387

자료: e-나라지표

해외자원개발 지표로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자원개발률’이 사용되는데, 2023년 기준 석유가스의 자원개발률은 11%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40%, 우라늄 0%, 철 37%, 동 12%, 아연 23.4%, 니켈 43.3%임

6)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글로벌 자원전쟁 시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 2023. 6.

[자원개발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4	14	16	15	13	13	13	12	11	11	11
유연탄	56	55	53	50	38	30	32	34	41	40	40
철	22	18	15	28	26	32	32	34	34	43	37
동	11	11	6	7	8	8	10	12	8	10	12
아연	21.2	21.5	21.2	22.8	20.6	19.9	20.7	21.5	21.6	19.4	23.4
니켈	45.8	61.7	68.9	63.2	61.8	55.2	55.0	47.2	44.8	44.0	43.3

자료: e-나라지표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실적은 887억 6,300만 달러(석유가스 682억 4,000만 달러, 일반 광물 205억 2,300만 달러)이며, 이중 629억 7,800만 달러(석유가스 503억 2,500만 달러, 일반광물 126억 5,300만 달러)를 회수하였음.

나.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또는 삭제(이인선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이인선의원안과 이종배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3%에서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윤영석의원안은 기본공제율을 3%에서 5%(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이인선의원안과 윤영석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종배의원안은 적용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자금 조달 애로’가 30.8%로 가장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⁷⁾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법 제24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무형자산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중견기업 5%~7.5%, 중소

7)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기업 10%)이며 직전 3개년도 대비 투자 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10%임.

반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는 무형자산인 광업권 등 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둘째, 이인선의원안과 윤영석의원안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법인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 기업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자원 수급·가격, 국가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갖고 있으며, 투자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세제지원으로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업은 세제지원 적용기한의 연장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시그널로 인지하여 투자유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국가 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가 46.2%로 가장 많았음.⁸⁾

셋째, 이종배의원안의 경우 적용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상시적인 세

8)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액공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적용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예상되는 총비용 규모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했으나 자원확보 성과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거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M&A, 소지분·비운영사업 투자 등 외형확장식 자원개발에 치중되었고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운영권 확보 사업과 같이 내실 있는 투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⁹⁾

2013년 말 기준 석유공사·가스공사·민간기업의 193개사업 중 운영권사업은 61개(31.6%), 광물공사의 36개 투자사업 중 실질적 운영권사업은 2개(6%)에 불과하였음.¹⁰⁾

또한, 2014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시 해외개발자원의 국내 도입량을 검토한 결과, 민간 4개사가 확보한 12.5만 배럴/일 중 16.8%만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3.2%는 자원보유국의 국내판매 의무 등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2013. 10.

10)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2014. 9.

판단되었음.¹¹⁾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 중 국내 도입량은 약 17% 수준으로 저조하였음.¹²⁾

둘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2025년 예산 390억원, 2026년 예산안 710억원)을 통해 민간의 탐사·개발·생산사업 등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대어해주고 있음.

특히 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 제도가 운영되어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고, 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됨.¹³⁾

또한, 2024년 11월부터 융자대상사업 중 정책적 중요사업(사업운영권 확보, 자원 국내 도입 가능 사업, 전략·핵심광물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융자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되었고, 특별융자 감면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1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2015. 11.

12)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20. 5.

1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이면 수입배당금액의 95%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⁴⁾

넷째, 조세특례는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통상 3년 단위로 연장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적용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에 대해 각 부처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설계 및 운영에 고려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¹⁵⁾

14)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

다섯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적인 세액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해서는 적용기한이 필요하다는 점, 다른 조세특례와의 과세불형평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 제도의 경우 특례의 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13년 적용기한이 종료되었던 만큼 정책효과 등에 대한 조세특례 평가를 거친 이후에 일몰기한 연장 또는 영구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